< 별지 제7호서식 >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위탁계약서

1. 시·군·구청장
2. 훈련기관 : 가. 훈련기관명 : 나. 소재지 :
   다. 대표자 : 라. 주민등록번호 :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이하 "훈련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에 관하여 시·군·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훈련기관(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훈련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1)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2) "을"은 훈련규정을 준수하고 훈련생이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훈련기법, 교과과정 등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이 실시할 훈련과정, 훈련기간, 훈련시간과 훈련비는 다음과 같다.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직종별예시 훈련직종	식사 및 기숙사 제공여부
		총훈련시간	월	1일		

제3조 "을"은 훈련생명단과 각 훈련생에 대하여 붙임 서약서를 작성 위탁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1) 훈련비의 산정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을"이 훈련규정에 의거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갑"은 "을"에게 훈련비를 지불한다.
(3) "갑"은 "을"이 제2조에 규정된 훈련시간에 미달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훈련비를 훈련시간에 비례하여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을"의 부당한 출석확인 등으로 훈련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훈련수당이 지급되었을 경우 "을"은 해당금액을 "갑"에게 환불한다.
(5) "갑"은 "을"에게 훈련규정 제14조에 의하여 확정된 훈련생에 대해서만 훈련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훈련비를 지급한다.

제5조 "을"은 훈련수료후 훈련생이 모두 취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은 훈련기간중 훈련목적 이외의 현장노동 강요나 부실교육 등의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 경우 "갑"은 훈련규정 제27조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훈련기간중 훈련생이 재해를 입은 경우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 "을"은 훈련생의 출석상황을 정확히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교통비 등을 신속히 청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규정 제27조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훈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2. 훈련실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지역실업자직업훈련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을"이 훈련기관을 폐쇄한 경우 당연 계약해지로 간주한다.

제11조 "을"이 훈련기관을 폐쇄·이전코자 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갑"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군·구청장 (서명 또는 인)

지역실업자직업훈련기관장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 명단(훈련규정 별지 제7호의2서식)
2.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서약서(훈련규정 별지 제7호의3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